

8

일본 증권형토큰의 현황

작성 부서
동경사무소

작성일
2023.6.30.

I 개요

1. 목적

- 본 자료는 '23년 6월 6일, 금융청이 주최한 '디지털·분산형금융에의 대응방향 등에 관한 연구회'에서 일본 STO협회가 발표한 자료로써 필요시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번역·정리

※ STO협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STO 협회의 주요 업무 및 자율 규제>' 참고, 암호자산과 관련된 일본의 법령 현황은 해외금융 ISSUE JOURNAL 2023-5호에 정리한 '일본 암호자산 관련 규제 현황' 참조

2. 정의

- 기업이 블록체인등 분산원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증권형토큰(ST : SecurityToken)이라 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STO(Security Token Offering)라 함
- '20년 5월 1일 시행된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이하 금상법)에 의해 ST의 정의 및 규제 범위가 명확해지며, STO를 통해 발행하는 주식, 사채,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지분 등이 규제대상이 되었음
- 신탁수익권, 집합투자기구지분 등 금상법제2조제2항각호에 열거된 권리(제2항유가증권)를 토큰*으로 발행한 것은 유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상법상 「전자기록이전권리」에 포함
-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가치(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적 장치 등에 표시되는 경우로 한정

□ 금상법상 ST는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등'으로 규정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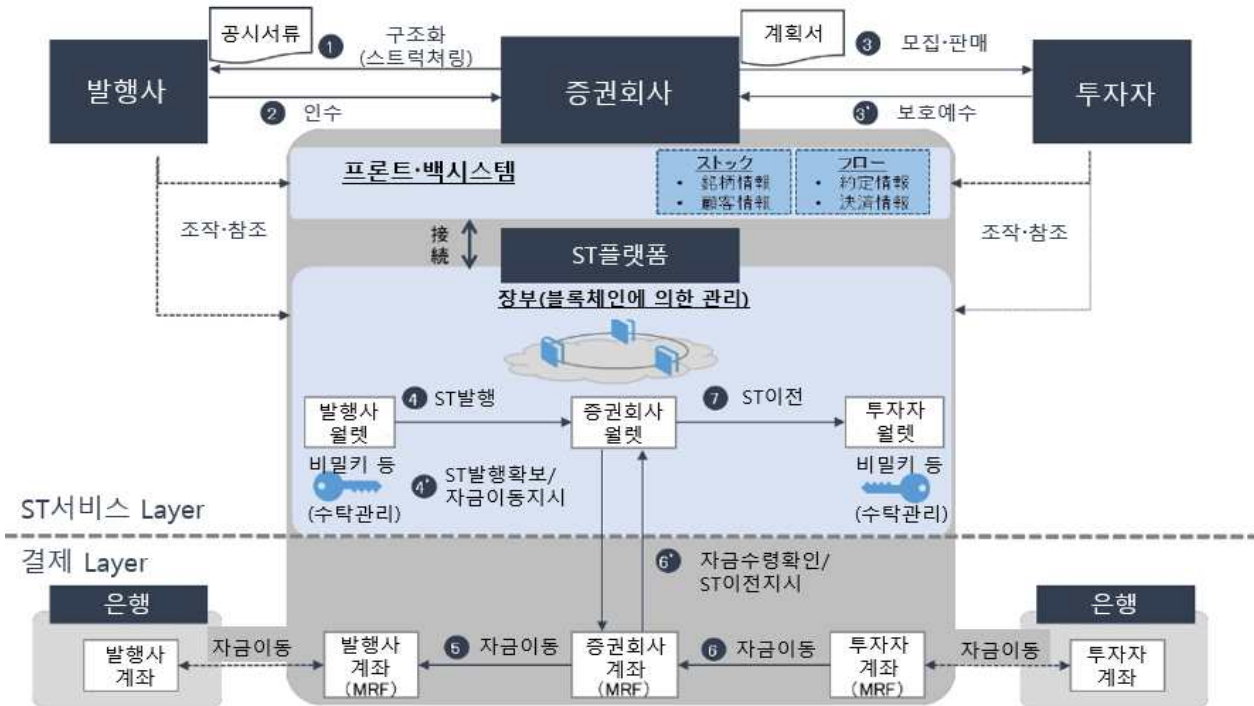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등	
토큰화유가증권	주식, 사채, 투자신탁 등
전자기록이전권리	집합투자기구지분, 신탁수익권등
적용제외전자기록이전권리	전자기록이전권리 중 유통성 등을 고려하여, 취득자 제한이나 양도 제한을 기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권리
기타ST	계약상 발행자 등이 관리하는 권리자나 권리수를 전자적으로 기록한 장부의 개서(재산적 가치의 이전)와 권리의 이전이 일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
부동산특정법ST	부동산특정법에 의해 규제되는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 계약에 근거한 권리는 금상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3년 3월 금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금상법의 대상이 될 예정

3. ST의 규제 구분

구분	공시규제 종류	업종 규제등록 유형	주요자율 규제기관
토큰화된 유가증권 표시권리 주식 및 사채 등 제2조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이 토큰화된 것들 (금상법 제2조제2항 주권상장 법인의 유가증권 표시권)	제1항 유가증권 원칙적으로 발행 등 공시의무 있음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등록시 최소 자본금 5,000만엔, 자기자본비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높은 수준의 규제	일본 증권업협회
전자기록이전권리 집단투자제도, 신탁수익권등 제2조제2항 각호의 권리가 토큰화된것			일본 STO협회
적용제외 전자기록이전권리 내각부령에 의해 전자기록이전권에서 제외되는것	제2항 유가증권 원칙적으로 발행 등 공시의무 없음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최소 자본금 1,000만엔 (자기자본 규정 없음)	

3. 증권형토큰 거래의 기본 구조

□ 거래의 구조 및 흐름도



4. ST발행 등 블록체인 도입의 이점

□ 효율성

- 거래 이후 단계에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유 기반이 도입될 수 있음

□ 위·변조 불가

- 블록체인의 구조는 설계상 거래 데이터가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프라이빗 또는 컨소시엄 체인을 이용하여 지갑에 저장하는 토큰을 오프라인 체인으로 관리할 경우, 외부 유출 방지도 가능

□ 유동성 확보

- 기관투자자 대상의 증권화 상품이나 대체자산 상품에 개인투자자도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동성이 낮은 자산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자동화

-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이자 지급* 등의 자동 집행이 가능하며, 또한, 본인 확인 등 일정한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자동화

* 스테이블 코인 등 프로그래머블 머니와의 연계를 통해 이자 지급 및 상환의 자동 집행도 가능

□ 기타

- 투자자가 직접 발행사의 장부 확인 가능
- 특정 분야의 팬 유저(fan user)를 위한 마케팅 요소 도입 가능

II 금융상품거래법 등 규제대상의 개요

1. 전자기록이전권리 판매 권유와 관련한 행위규제등

-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이 전자기록이전권리의 판매·권유를 실시할 때에는 주식이나 사채 등과 마찬가지로 금상법상 행위규제나 '범죄에 의한수익의이전방지에관한법률'(범수법)상 거래시 확인, '금융서비스 제공에관한법률'상 중요사항 설명 등의 의무 등 부과

※ 단, 증권형토큰은 현재 비상장 유가증권임에 유의하여 해석

- 전자기록이전권리는 투자 대상이 되는 신탁수익권이나 집합투자 기구 지분 등의 상품 내용, 투자 리스크 등의 설명과 더불어 이전이나 결제 등에 대해 다른 유가증권과는 다른 특성 및 리스크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한 적절한 판매·권유 등이 요구됨

○ 적합성 원칙(거래개시기준)

- 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때 분리관리업무 등에 관한 방침의 공표 및 조치(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관한 내각부령(업부령) 제70조의2제5항)

제72조의2(업무관리체제의정비)

5 법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거래업자등(전자기록이전증권표시권 등에 대하여 유가증권등관리업무 또는 제7조 제1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한다.) 가 갖추어야 하는 업무관리체계는 제1항의 요건 외에 법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이전증권표시권리 등을 표시하는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유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자기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또는 구분하여 관리하는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 등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 등의 관리에 관한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채무의 이행에 관한 방침(해당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이행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

○ 광고 등의 규제

- 광고를 실시할 때 취급 ST의 성질이나 보관·이전 구조에 대해 오인 등이 없도록 할 것(업부령 제78조)

제78조(과대광고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 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이하생략)

○ 전자기록이전권리 개요 설명(계약 체결 전 교부 서면)

- ST 매매 등에서 계약체결 전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ST의 성질에 관한 주의 환기를 할 것(업부령 제83조)

제83조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된 계약체결 전 교부서면의 공통기재사항)
체결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거래계약이 유가증권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 법 제37조의3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단, 그 체결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거래계약이 전자모집취급업무와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것인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이하생략)

2.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등 분별관리 등

- 증권형토큰 관련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에 대해 철저한 분리관리 및 유출 리스크 대응조치 등이 요구
 - 금전예탁에 관해서는 다른 일반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산과는 분리하여 신탁은행에 예탁(금상법 제43조의2)

제136조(확실하고 정연하게 관리하는 방법)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유가증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五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이 스스로 관리하는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 다음 가목 및 나목에 열거하는 방법(금융상품거래업(등록금융기관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같다)의 고객 편의 확보 및 금융상품거래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실시하는 금융상품거래업의 상황에 비추어 나목에 열거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도의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은 다음 가목에 열거하는 방법)

가. 고객유가증권인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에 대하여 고유유가증권 등과 명확히 구분하고, 어느 고객의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인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상태(해당 고객유가증권인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과 관련된 각 고객의 지분이 자기 장부에 의하여 즉시 판별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다음 호 가에서 동일)에서 관리하는 방법

나. 고객유가증권인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을 표시하는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지 않은 전자기기, 전자적 기록매체 및 그 밖의 기록매체(문서 및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방법 및 기타 이와 동등한 기술적 안전관리조치를 강구하여 관리하는 방법

- 한편 유가증권에 관해서는 **증권형토큰**의 경우,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토큰 이전** 등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키***를 부여받음

* 공개키 암호방식에서 사용되는 한 쌍 중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키

- 금상업자 등이 **증권형토큰**의 예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개인키도 예탁받아 법령상 분리관리와 관련된 규정 등에 근거해 자기 또는 외부위탁처에서 자신의 **고유재산 등과는 분리하여 관리해야 함**(업부령 136조 1항 5호)

제43조의2(분리관리) 금융상품거래업자등은 다음에 열거하는 유가증권(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확실하고 정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기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등의 자율규제(STO협회)

□ 중요한사항의 설명 등 주요 가이드라인

-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
- 거래 개시 기준 관련 고려사항
- 전자기록이전권리 등의 거래 등에 관한 규칙'
- ※ 고객에게 확인서 징구(토큰화 유가증권만 해당)

□ 증권형토큰(ST) 플랫폼의 모니터링 등

- 플랫폼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모니터링
- 플랫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수집
- 유가증권에 관한 정보 수집
- '등록 및 변경 등록(업무방법서 변경 포함)시 모니터링 실시'

□ 외무원자격, 외무원등록관련 사항

- 「외무원의 자격,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전자기록이전권리등을 취급하는 경우, ST외무원의 등록*이 필요

* 일본증권업협회의 1종 외무원 자격시험을 수강해 합격한 후 ST외무원 자격연수를 수강하면 등록자격이 발생

※ 일부 준용하는 '일본증권업협회'의 가이드라인 등 규정

- 「협회원의 투자 권유, 고객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관련 고려사항」 (일본증권업협회 가이드라인)
- '토큰화 유가증권의 취급상황에 관한 보고요령' 등에 따른 정보 수집

III 증권형토큰의 유통시장

1. 유통시장 관련한 거래소 규제

□ ST의 매매 플랫폼 제공에 필요한 금상법상 규제

○ 증권형토큰 매매 플랫폼 제공에 필요한 금상법상 라이선스로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명확한 범위의 해석은 어려운 상황

1) 매매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 금융상품시장 거래소의 면허(진입장벽이 높음)

2) PTS업무를 행하는 경우 : 제1종금융상품업의 등록, PTS업무의 인가^(※주)

3) 비상장매매(OTC) 업무를 행하는 경우 : 제1종금융상품업자 등록 등

※주) 전자기록이전권리 거래시 PTS를 이용 가능하며(금융청 의견 청취 No. 196, 197)*, 금상법상 PTS의 인가기준 및 금상업자 등 감독지침에 인가할 때 일정한 유의사항 있음(금융상품거래업자대상종합적감독지침 IV-4-2-1②)

* 전자기록 이전 권리에 대해서도 사설거래시스템(PTS)의 이용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가 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법령 등에 근거해 적절히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금융상품거래업자 대상 종합적감독지침>

IV-4-2 승인 및 신고 등

IV-4-2-1 인가

사설거래시스템(Proprietary Trading System:PTS)은 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업무는 금상법에서도 구 증권거래법에서의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 금상법 제2조 제8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업무의 인가에 대해서는 이하의 유의사항을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 생략)

2. 유통시장 관련한 최근 동향

□ 증권형토큰을 취급하는 거래소는 현재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음

- 현재는 ST를 취급하는 금상업자 등(증권회사 등)이 자기매매로 투자가로부터 취득해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거래 실시 (※ 해외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함)
- 금상업자 등이 장내에서 고객 주문의 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약정이나 집행 시스템 등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설거래시스템(PTS)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ST의 거래 장소로서 PTS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 '21년 4월에 오사카 디지털 익스체인지(ODX)가 설립되어 '23년도부터는 ST의 PTS 업무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공표(<https://www.odx.co.jp/company/about/>)

ODX의 회사개요 소개 화면

会社概要 Company Info	
トップ / 企業情報 / 会社概要	
会社名	大阪デジタルエクスチェンジ株式会社 오사카디지털익스체인지 주식회사
事業内容	株式の私設取引所 (PTS) 運営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取引所運営 (予定) 주식의 사설거래소(PTS)운영 증권형토큰거래소운영 (예정)
株主構成	SBI PTS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70% 株式会社三井住友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20% 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5% 株式会社大和証券グループ本社 5% SBI PTS홀딩스주식회사 (70%)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20%) 노무라홀딩스주식회사(5%) 다이와증권그룹본사(5%)

※ 금융청 심의회 시장제도 워킹그룹(WG)의 중간정리('22년 6월 4일)에서 비상장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PTS의 인가심사에 대해 심사내용·절차의 명확화, 취급상품이나 취급액수에 따라 인가기준을 적절히 설정해 나갈 것과 그에 따른 인가절차의 신속화에 힘써야 한다는 방침 제시

✓ 인가 심사의 유연화·신속화 등

→ 심사 내용 및 절차의 명확화, 인가 기준의 적절한 설정 (감독 지침 개정)

✓ 자주규제기관에 의한 관여(자주규제규칙 창설)

→ '사설거래시스템에서의 전자기록이전권리 거래 등에 관한 규칙' 제정

IV 최근의 ST 발행 사례

1. 발행사례의 유형과 건수, 금액

유형	형태	건수	금액	비고
주식	사모 (제3자배정)	3건	1.01억엔	비상장기업에 의한 제3자 배정 증자를 ST로 실시(실증실험적인 발행에 그침)
회사채	자기모집	3건	18억엔 (사모 제외)	① 발행회사가 자기모집 시 STO를 이용하는 경우
	공모	2건		②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증권회사가 인수 또는 모집시 STO로 모집하는 경우
	사모	1건		③ 사모 시 STO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기록이전권리	공모	2건 (예정1건)	14억엔	합동회사(GK)가 익명조합계약(TK)에 출자금을 출자하는 익명조합출자지분(GK-TK)의 토큰화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증권)	공모	10건 (예정3건)	292억엔	제1항유가증권의 토큰화
적용제외전자기록 이전권리	사모	1건	비공개	전문투자자를 위한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LPs)을 토큰화

* 일종의 유한책임회사(LLC)

2. 회사채ST (토큰화 유가증권)

□ 회사채는 이체채(振替債)*가 일반적이고 이미 전자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ST로 발행하는 인센티브는 낮으나, 이체채로는 관리가 어려운 투자자의 혜택 등 계약사항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

* 권면을 발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이체계좌부 잔액기록으로 관리하는 무권면(페이퍼리스) 채권

발행회사	발행연월 (발행금액)	판매대상	주관사	특기사항	플랫폼
SBI증권	'21.4. (1억엔)	일반투자자	자기모집	액면금액당 10XRP(암호자산) 부여	ibet for Fin (Bootstry)
마루이그룹	'22.6. (1.2억엔)	에포스카드회원 (신용카드)	자기모집	이자를 에포스카드 포인트 및 금전으로 지급	Securitize
스팍스그룹	'22.6. (10억엔)	일반투자자	LINE증권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홍보	ibet for Fin (Bootstry)
일본거래소 그룹	'22.6. (5억엔)	일반투자자	노무라증권	환경 데이터를 토큰화하여 투자자에게 공시	ibet for Fin (Bootstry)
마루이그룹	'22.10. (1.1억엔)	에포스카드회원 (신용카드)	자기모집	이자를 에포스카드 포인트 및 금전으로 지급	Securitize
비공개	'23.2. (비공개)	비공개	사모, 토카이도쿄증권	비공개	비공개

3. 익명조합출자지분(GK-TK방식)의 ST (전자기록이전권리)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ST. 합동회사*(GK)가 부동산 수익권을 자산으로 익명조합계약(TK)에 의한 출자지분을 ST로 발행하는 것 (금상법상 제1항유가증권으로 분류)

* 일종의 유한책임회사(LLC)

발행회사	발행연월 (발행금액)	기초자산	판매대상	취급증권	상환기간	플랫폼
토세이 프로퍼티 펀드(시리즈1)	'21.11. (870백만엔)	공동주택, 사무실, 상업시설	일반투자자	토카이도쿄증권	5년	ADDX
토세이 프로퍼티 펀드(시리즈2)	'23.2. (570백만엔)	오피스빌딩	일반투자자	토카이도쿄증권	5년	ADDX
부동산디지털증권 시부야진구마에재 개발오피스	'23.7.(예정) (1,815백만엔)	사무실, 점포	일반투자자	Hash Dash, 토카이도쿄증권	7년	Hash Dash

4.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ST (토큰화 유가증권)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ST. 기존 주식예탁증서(ADR) 발행 등에 이용되던 구조를 이용해 부동산 수익권을 신탁은행에 예탁하고 수익증권을 ST화한 부동산 펀드

발행연월 (발행금액)	기초자산	판매대상	주관사	상환기간	플랫폼
'21.8. (1,453백만엔)	맨션	일반투자자	노무라증권, SBI증권	5년	Progmat (MUFJ신탁은행)
'21.12. (780백만엔)	물류센터	일반투자자	SBI증권	5년	Progmat (MUFJ신탁은행)
'22.3. (2,156백만엔)	학생용 레지던스	일반투자자	다이와증권, SMBC닛코증권	7년	Progmat (MUFJ신탁은행)
'22.3. (2,089백만엔)	온천시설	일반투자자	노무라증권	5년	Progmat (MUFJ신탁은행)
'22.6. (1,819백만엔)	공동주택	일반투자자	SBI증권	7년	Progmat (MUFJ신탁은행)
'22.8. (6,915백만엔)	대규모물류시설	일반투자자	다이와증권	7년	Progmat (MUFJ신탁은행)
'22.9. (1,833백만엔)	공동주택.점포.사무실	일반투자자	노무라증권	7년	ibet for Fin (Bootstry)
'22.12. (1,630백만엔)	집합주택.점포.사무실	일반투자자	SBI증권	5년	Progmat (MUFJ신탁은행)
'22.12. (2,165백만엔)	온천시설	일반투자자	노무라증권	7년	ibet for Fin (Bootstry)
'23.4. (3,400백만엔)	온천시설	일반투자자	다이와증권	7년	Progmat (MUFJ신탁은행)

5.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지분(LPs)의 ST(적용제외전자기록이전권리)

- 자산운용자(무한책임조합원)와 투자자(유한책임조합원) 사이의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 계약 지분을 ST화한 것

※ LPs는 제2항유가증권이지만 ST화했기 때문에 제1항유가증권으로 분류

발행회사	발행연월 (발행금액)	기초자산	판매대상	취급증권사	상환기간	플랫폼
비공개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	'23.11.(예정) (비공개)	마루베니 프라이빗 리츠 투자법인의 기발행한 투자구	전문투자자	사모, 미즈호증권	50년	ibet for Fin (Bootstry)

* 부동산투자신탁에서 투자자가 투자법인에 출자하는 단위

[참고] ST의 플랫폼

- 일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반은 다음과 같음
 - 퍼블릭 체인(퍼미션리스)형태의 블록체인을 주로 이용하는 암호자산과 달리 프라이빗형 또는 컨소시엄형(퍼미션드)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

플랫폼 (운영회사)	BC형태	기반기술	비고
ibet for Fin (BOOSTRY)	컨소시엄형	GoQuorum	금융기관·금상업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각종 의사결정 등은 모두 컨소시엄 내에서 이뤄짐
Progmatt (MUFJ신탁은행)	프라이빗형	Corda	향후 버전 업에 의해 컨소시엄형이 될 예정이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금 결제를 실시할 예정
Securitize (Securitize Japan)	프라이빗형	Quorum	미국 Securitize사의 일본법인이 운영하는 플랫폼, 미국에서는 이미 퍼블릭형으로 ST발행을 하고 있으며 에이전트로서 SEC에 등록
ADDX (ADDX Pte.Ltd)	프라이빗형	Ethereum기반 독자기술	싱가포르 ADDX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싱가포르 금융 관리국(MAS)으로부터 ST의 발행, 거래 및 보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를 취득
Has DasH Chain (Hash DasH Holdings)	프라이빗형	Quorum	HashDasH(금상업자)의 모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V 향후 과제

□ 매력있는 상품개발(기초자산의 다양화)

- 현재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ST는 넓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는 구조
- 따라서 투자자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매력 있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에 대한 인지도 향상

- 제도적으로 ST가 출범한 지 아직 3년정도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음
- 또한 이미 주식이나 사채는 전자화하고 있어 ST의 장점 등 특징이 차별화되지 않는 문제점

⇒ 향후, ST의 특성·장점 등을 홍보하고 차별화된 특성을 개발할 필요

□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전자기록이전권리의 규제 불일치 해소

- 수익증권발행신탁(1항유가증권의 토큰화)과 전자기록이전권리(2항유가증권의 토큰화)는 투자자에게 있어서 투자효과는 같지만, 금상법상 규제는 불일치하여 일치하는 방향의 규정 개정 필요
-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되어, 계약체결전 서면 기재사항의 내용이 과중(부동산 신탁 수익권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한 계약체결 전 교부서면 기재사항 특례)가 적용되어 계속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서면에 각종 기재가 요구) (업부령 제7조제6호 등)

제7조(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법 제29조의2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六 부동산신탁수익권 등 매매 등 업무(택지(택지건물거래업법(1956년 법률 제176호) 제2조제1호에 열거하는 택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건물과 관련된 법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신탁수익권"이라 한다) 또는 조합계약, 익명조합계약이나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에 기초한 권리 중 해당 권리와 관련된 출자대상사업이 주로 부동산신탁수익권에 대한 투자를 하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이하 동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 전자기록이전권리만 신고서 첨부서류로 백서 첨부가 요구
(특정유가증권내용등의공시에관한내각부령 12조 1항 1호)

제12조(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법 제5조제13항(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다음 조에서 "첨부서류"라 한다.)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유가증권신고서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생략)*

ㄱ. 내국 특정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된 유가증권신고서(제4호의3의2 양식, 제4호의3 양식, 제5호의2의2 양식 및 제5호의2의3 양식으로 작성된 유가증권신고서는 제외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바. 해당 내국특정유가증권이 특정전자기록이전권리(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자기록이전권리로서 특정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인 경우로서, 해당 특정전자기록이전권리의 구조, 조달자금의 용도, 조달자금을 충당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해당 특정전자기록이전권리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투자설명서는 제외)을 해당 특정전자기록이전권리의 모집 또는 매출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

1. 개요

□ 개요

- 일본 STO협회는 증권사 등을 회원사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19년 10월에 설립되었고, '20년 5월 금융청으로부터 금융상품거래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인정금융상품거래업협회

□ 목적

- 일본 STO협회는 전자기록이전권리등의 매매 및 기타 거래 등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여 금융상품거래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
- 또한, '금융자본시장 활성화·고도 산업 육성·글로벌한 시점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추진하여 증권형태큰 홍보, 보급에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주요 업무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 ① 금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회원사 및 금융상품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 권고 및 기타 업무를 실시
- ② 전자기록이전권리등의 매매 및 기타 거래 등에 대하여, 계약 내용의 적정화, 그 외 투자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 지도, 권고 및 기타 업무를 실시
- ③ 회원사 및 금융상품 중개업자에 의한 사기행위 또는 부당한 이득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 수행
- ④ 전자기록이전권리등의 매매 및 기타 거래 등에 관한 공정한 관행을 촉진해 거래의 신의성실 원칙을 조성하는 업무를 실시

- ⑤ 회원사 및 금융상품 중개업자의 법령에 근거하는 행정 관청의 처분이나 정관 기타 규칙 또는 거래 신의성실 원칙 준수 상황과 정회원의 영업 및 자산 상황을 조사

□ 증권거래 등의 상담·민원, 알선

- 투자자로부터의 상담 대응·불만 해결 및 전자기록이전권리등의 매매 그 외의 거래 등에 관한 정회원 및 금융 상품 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실시*

* NPO법인인 증권·금융 상품 민원 상담 센터(FINMAC)에 위탁

□ 증권형토큰 시장의 제도 정비·시장 관리 업무

- 전자기록이전권리등의 매매 및 기타 거래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적정화에 필요한 자주 규제를 제정해, 해당 회원사 및 금융 상품 중개업자의 내규 및 관리 체계의 정비를 요구

□ ST외무원 등록 사무 및 자격시험·연수 등의 실시

- 금융청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외무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실시 하는 것 외에 증권형토큰 외무원 자격 시험 및 연수 등을 실시

□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 등 및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

-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리등 및 이것들에 부수하는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 및 홍보를 실시

□ 관계단체와의 의사소통 및 의견조율

- 회원사간 및 금융상품거래업과 관계가 있는 단체등의 의사소통 및 의견의 조정을 도모해, 여러 시책을 추진

□ 반사회 세력 배제에 관한 지원

- 금융상품 거래 및 금융상품 시장에서 반사회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회원 등의 반사회적 세력 배제 대책을 지원

3. 자율 규제

① 전자기록이전권리등의 거래 등에 관한 규칙

- 적절한 투자 권유가 실시되도록 전자기록이전권리등의 보유·이전 구조 및 리스크를 이해한 사람이나 과거에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과 거래를 실시하도록 각 회원사에 「거래 개시 기준」의 설치를 요구(동 규칙 4조)

② 전자기록이전권리모집취급등에 관한 규칙

- ① 발행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 실시 의무 및 심사항목 제정
- ② 사내 심사 체제 등의 구축
- ③ 전자기록이전권리의 이전 방법이나 구조 등에 관한 플랫폼 관련 심사 등

③ 전자기록이전권리등의 발행 시장 관련 기간시스템 가이드라인

(1) 목적

- ① 회원사가 전자기록이전권리등의 발행에 사용하는 기간시스템의 심사·검증 기준의 책정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 제정
- ② 회원사가 시스템 위탁업체 기업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거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게 함

(2) 주요 내용

① 기간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능

가. 주요기능(발행, 배포, 이전(매매), 상환, 역이전, 정지 등)

나. 부수기능(토큰의 발행·배포·이전에 관한 정보 관리, 기간시스템 모니터링, 거버넌스 구축)

다. 연계기능(KYC 서비스, AML/CFT 서비스와의 연계)

② 운영 사업자에 의한 리스크·대응책 설명 체제 정비

③ 정보보안, 개인정보 취급, 지원체제(운영사업자 및 관계기업의 긴급 연락·응답창구 설치), 협회 및 회원사간 정보공유